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54
----------	---------

제안년월일 : 2025년 9월 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은 3,000 m^2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 범위 내에서 경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로 인해 교통유발 요인이 줄어들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 시행시 3,000 m^2 미만 시설물 소유자의 경우 감면적용을 받지 못해 시설규모에 따른 감면차별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부담금 감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조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정의하고 별지1~3호의 행정서식과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포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차목)
- 별표1의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대상에서 면적 3,000 m^2 를 삭제(안 별표1)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률 결정통보서 등 별지 1~3호 서식 및 시행일을 각각 수정함(안 별지 1~3호 서식 등)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별표1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 내

별지 제1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의 무 휴 업 또 는 자 율 휴 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별지 제2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별지 제3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자. (생략) <u>< 신 설 ></u> [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1항 관련) <table><tr><th>프로그램</th><th>대상</th><th>이행기준</th><th>최대경감비율</th></tr><tr><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h>프로그램</th><th>최대경감(%)</th><th>신청여부</th><th>세부사항</th></tr><tr><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 신 설 ></u>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u>< 신 설 ></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자. (현행과 같음) [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1항 관련) <table><tr><th>프로그램</th><th>대상</th><th>이행기준</th><th>최대경감비율</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시설물 소유자 (3000㎡ 이상)</td><td>○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td><td>○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td></tr></table>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h>프로그램</th><th>최대경감(%)</th><th>신청여부</th><th>세부사항</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5</td><td></td><td>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3000㎡ 이상)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자. (현행과 같음) <u>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u> [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1항 관련) <table><tr><th>프로그램</th><th>대상</th><th>이행기준</th><th>최대경감비율</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시설물 소유자</td><td>○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td><td>○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td></tr></table>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h>프로그램</th><th>최대경감(%)</th><th>신청여부</th><th>세부사항</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5</td><td></td><td>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 신 설 ></u>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u>< 신 설 ></u>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3000㎡ 이상)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현행					개정조례안	수정안(위원회안)				
프그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프그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 신 설 >						의휴또자휴	무업는올무	5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프그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프그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 신 설 >						의무휴업또는자휴무	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별표1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범위 내

별지 제1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의 무 휴 업 또 는 자 율 휴 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별지 제2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별지 제3호서식 중 업무택시제란 아래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자. (생략) <u>< 신 설 ></u> [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 1항 관련) <table><tr><th>프로그램</th><th>대상</th><th>이행기준</th><th>최대경감비율</th></tr><tr><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신청여부</th><th>세부사항</th></tr><tr><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이행계획서 신청내용</th><th>경감신청</th><th>비고</th></tr><tr><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별지 제3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신청사항</th><th>결정사항</th><th>비고</th></tr><tr><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td></tr></table>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u>< 신 설 ></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 자. (현행과 같음) <u>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u> [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 1항 관련) <table><tr><th>프로그램</th><th>대상</th><th>이행기준</th><th>최대경감비율</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시설물 소유자</td><td>○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td><td>○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td></tr></table> [별지 제1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신청여부</th><th>세부사항</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5</td><td></td><td>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td></tr></table>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이행계획서 신청내용</th><th>경감신청</th><th>비고</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5</td><td></td><td></td><td></td></tr></table> [별지 제3호 서식] <table><tr><th>프 로 그 램</th><th>최대경감 (%)</th><th>신청사항</th><th>결정사항</th><th>비고</th></tr><tr><td>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td><td>5</td><td></td><td></td><td></td></tr></table>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u>< 신 설 ></u>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u>< 신 설 ></u>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매월 2일 이내 휴업(휴무) 시행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법정 의무휴업 일수(월단위) : 자율휴무 일수(월단위) :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5																																																																								